

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30일
신청 기관 · 단체	기관명		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		
	소재지		(전화번호:)		
대표자	대표자		생년월일		
	주소		(전화번호:)		

「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」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해양경찰청장 귀하

제출서류	1. 「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」 제17조제1항제2호 및 별표 9에 따른 인적기준·장비기준 및 시설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시설기준에 관한 도면 2. 사업계획서 3.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 또는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사본 4. 정관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